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657
------	------

2021. 9. 8.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

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금융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위탁 기간 : 2021. 12. 30. ~ 2024. 12. 29.(3년)
- 위탁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한종관)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
  -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
  -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포함)
  -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운영
  -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2022년 예산(안) : 100억 2천 59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최초위탁(1차) : 3년(2006.4.10~2009.3.31)
- 재 계 약(2차) : 3년(2009.4.1~2012.3.31), 3개월 연장(2012.4.1~2012.6.30)
  - ▶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2012.5.2)
- 재 계 약(3차) : 3년(2012.7.1~2015.6.30), 3개월 연장(2015.7.1~2015.9.30)
  - ▶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
- 재 계 약(4차) : 3년(2015.10.1~2018.9.30), 3개월 연장(2018.10.1~2018.12.29)
  - ▶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2018.6.25)
- 재 위 탁(5차) : 3년(2018.12.30~2021.12.29,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협약)

## 다. 재계약 필요성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계약 통한 집행업무 위탁이 타당
-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
-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20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이

- 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고유사무), 자금지원사무(업무대행)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권혁신 아카데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지역밀착플랫폼(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 평가기간 : 2021.2.22.~4월(20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수준,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90.74점
  -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
  -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 성과지표 설정 우수
  -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등
- 개선요청사항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완료(2021.6.1.)
  - 거버넌스체계 구축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검토 → 지역활동가 및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
  - 인적자원구성에 있어 창업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원운용에 관심 둘 것 → 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총원완료 및 재단 내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3명 채용예정(2021.8월)
  - 서울시 표기 강화 등 서울시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

#### 나. 기 타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 -5958, 21.4.20)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021.5.17.) : 적정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2021.7.13) : 적격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가 최초 동의(2012.5.)를 받은 후 6년이 경과<sup>1)</sup>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민간위탁 사무 현황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장 시설개선 및 협업화 지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교육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증가로 재기컨설팅과 사업정리비용 지원은 증가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9. 3. 28.>

**\*2018년 재위탁 당시에는 해당 조문 개정 이전인 7년을 적용하여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였음.**

- 이에 2020년 두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원상 복구 등 사업정리 비용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 등을 추진했음.

< 주요 정량목표 대비 사업추진실적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7.31.기준)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진입기	소상공인 교육	명	14,000	15,774	7,000	8,199	10,000	6,487
	창업컨설팅	명	6,150	6,229	6,500	7,033	6,500	5,017
성장기	자영업클리닉	개	1,800	1,939	700	896	1,400	806
	자영업협업화	개	24	24	25	27	25	-
	소상공인동행 프로젝트	개	35	34	40	40	45	45
퇴로기	재기컨설팅	명	420	450	490	545	800	793
	사업정리비용 지원	개	-	234	800	754	800	793

- 이 밖에 자치구별 지역밀착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 소상공인 종합지원 조직체계를 완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25개 지역밀착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재단은 2006년 최초위탁 후 재계약(3회)과 재위탁(1회)을 거치면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음.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지원업무의 영역이 창업 홍보에서부터 컨설팅, 조사·분석, 전문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지원과 창업, 경영지원 등의 맞춤형 전문성이 생애주기별로 확보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재단은 15년 이상의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특화된 노하우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특히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 폐업·재기까지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 재단의 현장 경험과 사업수행조직<sup>2)</sup>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21.04.)에서는 90.74점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재계약 적격자 심의(2021.07.)에서도 적격(83점)<sup>3)</sup> 평가를 받았음.

- 다만, 재단이 15년간 장기수탁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으로 전환<sup>4)</sup>했던

---

2)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52명, 지역본부 16명(센터장1, 팀장11, 팀원56) 2021.7.기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9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1.2.)

4) 사무형 위탁은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9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재계약 제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1.2.)



2018년 재위탁 당시 2회의 단독응찰로 수의협약한 사례 등 민간  
부문의 경쟁원리가 형성할 수 없는 시장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sup>5)</sup>  
사무의 대행<sup>6)</sup>이나 재단의 고유사무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5) 해당 사무는 공공성이 강하고 인건비 항목 및 수익성이 없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으로 한정되어 수탁기관이 제한적이며, 공익적 사업모델 추진으로 민간업체에는 동기요인이 없음.

6) 대행은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7 (2021.2.)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57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
- 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금융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위탁 기간 : 2021. 12. 30. ~ 2024. 12. 29.(3년)
- 위탁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한종관)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

-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
-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포함)
-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운영
-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22년 예산(안) : 10,020,590천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최초위탁(1차) : 3년('06.4.10~'09.3.31)
- 재 계약(2차) : 3년('09.4.1~'12.3.31), 3개월 연장('12.4.1~'12.6.30)
  - ▶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12.5.2)
- 재 계약(3차) : 3년('12.7.1~'15.6.30), 3개월 연장('15.7.1~'15.9.30)
  - ▶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
- 재 계약(4차) : 3년('15.10.1~'18.9.30), 3개월 연장('18.10.1~'18.12.29)
  - ▶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18.6.25)
- 재 위 탁(5차) : 3년('18.12.30~'21.12.29,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협약)

## 다. 재계약 필요성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계약 통한 집행업무 위탁이 타당
  -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
  -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이 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고유사무), 자금지원사무(업무대행)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권혁신 아카데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지역밀착플랫폼(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

###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 평가기간 : '21.2.22.~4월('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수준,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90.74점
  -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
  -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 성과지표 설정 우수
  -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등
- 개선요청사항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완료('21.6.1.)
  - 거버넌스체계 구축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검토 → 지역활동가 및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
  - 인적자원구성에 있어 창업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원운영에 관심 둘 것 → 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총원완료 및 재단 내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 3명 채용예정('21.8월)
  - 서울시 표기 강화 등 서울시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4.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

#### 나. 기 타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958, 21.4.20)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1.5.17.) : 적정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21.7.13) : 적격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장현아 (☎2133-5194)